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20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 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 제목 "(배출부과금의 감면)"을 "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6조(배출부과금의 감면) (생	제16조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
략)	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
		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
		<u>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